

**2026년 AI 응용제품 신속 상용화
지원사업(보안·네트워크·생활 등)
공모안내서**

-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_Type2

2026.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목 차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2
2. 추진근거 및 관련규정.....	2
3. 사업 목적 및 내용.....	4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5
5. 사업 추진절차.....	6

II.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9
2. 분과별 사업수행 내용.....	13
3. 사업신청 및 접수.....	18
4. 문의처.....	20

III.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22
2. 평가방법 및 기준.....	22
3. 기타 유의사항.....	25

IV. 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V. 사업 관리 규정 및 지침(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

I. 사업 개요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 한국은 ICT 분야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 네트워크, 정보통신 등의 대국민 제품 보급률이 높아 AX 제품 상용화 시 큰 파급 효과 기대
 - ※ 2023년 기준 한국 인터넷 보급률 97.4%로 글로벌 최상위권(세계은행 WDI)
- 이동통신·미디어·모빌리티 등 다양한 ICT 제품·서비스 AX를 통해 상용화 범위를 넓히고 대규모 제품 생산·수요 기반 확보 추진
 - ※ 기간통신사업자 등 대규모 AX 상품 생산·공급이 가능한 기업 수요 연계 추진

2 추진 근거 및 관련 규정

가. 추진 근거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2조(선도사업의 추진과 지원)
-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9조(전담기관의 지정·운영)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32조(정보통신융합 등 기술·서비스 개발 등의 지원)

나. 추진 경과

- '25.11월 : 사업 전체 기획위원회 개최(과기정통부, NIA, NIPA, KISA 등)
- '25.11~12월 : 사업 수요조사 개시(총 2회)
- '25.11~'26.1월 : NIA 정보통신 분야 기획위원회 운영

다. 관련 규정

- 본 과제의 협약 및 수행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4-11호)」 및 부속지침을 적용하며, 그 외의 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관련 규정과 별도 특약을 마련하여 과제수행 관리
 - ※ 본 사업은 일반회계 비R&D 사업이며, 기술료 납부대상이 아님

- 동 사업이 공모과제 방식(매칭펀드 등)으로 추진됨에 따라, 협약체결~정산까지의 사업관리는 원칙적으로 아래의 지침에 의거 수행함.

○ 제안사는 반드시 상기 지침과 아래 지침·법령 등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NIA에서 유관 교육 진행시 모든 참여기업들의 담당자는 필참하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성과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 보고 등에 관한 지침

- 기금사업 점검계획 등에 관한 지침

- ICT 예산 정책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지침

※ 상기 규정 등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 및 부속 지침의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 사업관리기본운영규칙

-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 상기 지침 등은 제·개정 시 해당 지침으로 대체하여 적용

3 사업 목적 및 내용

가. 사업목적

- 단기간 내 성과 창출이 가능한 AI 융합 제품·서비스를 발굴하고 AI 전환을 지원하여 초산업의 AI활용 극대화 및 국내 AI생태계 활성화
 - 가정, 직장, 학교 등 국민의 다양한 일상에서 직·간접적으로 접할 수 있는 정보통신 분야 디바이스·서비스에 AI 기술을 접목·확산하여,
 - 대다수 일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품질 향상 등 성과를 위한 AI 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추진

나. 사업내용

- 국민 활용도가 높고, 파급력이 큰 핵심 프로덕트로 개발에 시간이 필요한 정보통신 분야 제품·서비스의 AX 개발 및 실증, 현장적용 등 추진
 - 통신, 네트워크가 필요한 각 요소별 핵심 디바이스 및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AX를 통하여, 국민 체감 효과가 높은 AI 서비스 확산 및 네트워크 분야 AI 응용제품 생태계 조성

< 2026년 AI 기반 차세대 정보통신 제품 상용화 지원 Type2 과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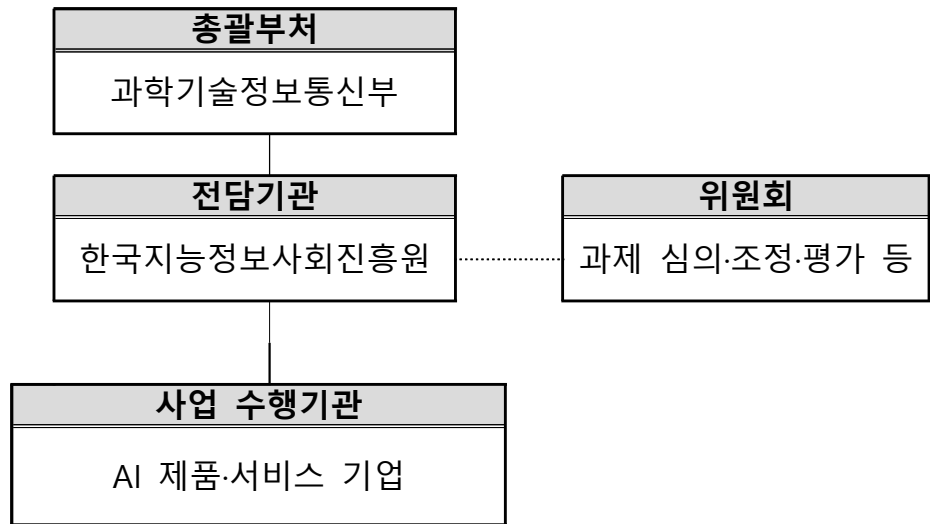
분야	구분	사업 기간	예산	분과별 과제 내용
정보 통신	Type2	'26	14.5억원 내외	① (분과1) 비정형 화물 분류·이동을 위한 피지컬 AI 응용제품 - 기존 컨베이어랙 등 핵심 설비 인프라의 변경 없이 즉각(Plug & Play) 투입 가능한 자율주행 협업형 피지컬 AI 응용제품 상용화
		'27*	13.5억원 내외	

* '27년은 13.5억원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세부 사업내용은 '표.사업 지원내용-2.분과별 사업수행 내용' 참고

4 추진체계 및 주요역할

□ 사업 추진체계



□ 주요 역할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괄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예산 지원 ○ 사업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전담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 사업공모 및 협약 체결 ○ 사업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성과평가
수행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 보고 ○ 기타 과제수행과 관련된 제반업무 등
사업심의위원회 사업평가위원회 과제조정위원회 결과평가위원회 AI기술전략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계획 등에 대한 심의·조정 ○ 공모안내서에 의해 접수된 공모제안서 평가 ○ 공모과제수행계획서 평가·심의·조정 ○ 공모과제 수행 단계별 점검 및 결과평가

- ▶ (수행기관) 주관기관 + 참여기관
 - ▶ (주관기관)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대표 기관(기업)으로 사업비 신청·관리 및 실적 보고와 정산 등 사업에 대한 책임이 있는 기관(기업)
 - ▶ (참여기관) 주관기관과 공동으로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기업)
- ※ (수요기관) 과제 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으로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병행할 수 있음

5

사업 추진절차

사업 추진절차('26년)

구분	일정(안)	내용	대상
과제 공모(RFP) 공고	6월	'26년 과제 공모내용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NIA
제안서 접수	6월	제안서 접수, 평가 준비	제안 컨소시엄 → NIA
사전검토	7월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자격요건 등	NIA
사업 선정평가	7월	과제평가위원회 구성, 제안내용 평가	과제평가위원회
과제 심의.조정	7월	평가결과,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내용, 예산 등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협약체결	7월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NIA ↔ 사업수행기관
착수 및 사업비 지급	7월	착수보고 및 정부출연금 지급 [사업기간 내 2회*(70%, 30%) 분할지급] * 협약체결, 중간보고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행	~12.31	사업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수시	현물(장비) 실사 등 현장점검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중간보고	10월	당해연도 중간 추진실적 보고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27.1월	최종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7.1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사업수행기관 → NIA

※ 과제선정 및 수행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사업 추진절차('27년)

구분	일정(안)	내용	대상
제안서 접수	1월	제안서 접수, 과제조정 준비	제안 컨소시엄 → NIA
과제 심의.조정	2월	'26년 사업수행 결과 평가, '27년 정부예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과제내용, 예산 등 심의.조정	과제조정위원회
협약체결	3월	최종수행계획서 제출 및 협약	NIA ↔ 사업수행기관
착수 및 사업비 지급	4월	착수보고 및 정부출연금 지급 [사업기간 내 2회*(70%, 30%) 분할지급] * 협약체결, 중간보고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수행	~12.10	사업수행기관별 과제 수행	사업수행기관
현장 점검	수시	현물(장비) 실사 등 현장점검	NIA → 사업수행기관
사업 중간보고	8월	당해연도 중간 추진실적 보고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 결과보고 및 평가	12월	최종 수행결과 보고 및 평가	사업수행기관 → NIA
사업비 정산 및 반납	'28.1월	사업비 정산에 따른 잔액/불인정금액/이자 반납	사업수행기관 → NIA

※ 수행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Ⅱ. 사업 지원내용

1

지원내용

가. 지원개요

구 분	주요내용 요약						
공모방식	○ 분야지정 공모(1개)						
지원기간	○ 2026년 협약일 ~ 2027년 12월 10일 *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70점 미만 과제는 2차년도 지원중단 가능) * 매년 연차협약을 체결하여 추진						
지원규모	○ 총 28억원('26~'27) 중 '26년 국비 지원금은 14.5억원 내외 * '27년은 13.5억원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1개 컨소시엄 선정(컨소시엄 당 3~6개 기업·기관으로 구성)						
지원분야	○ ① 비정형 화물 분류·이동을 위한 피지컬 AI 응용제품						
지원대상	○ 정보통신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실증을 위한 제품·서비스 공급기업, 수요기관 등 3~6개 기업·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26년 AX스프린트(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에 주관 수행기관으로 신청·참여한 경우, 본 지원 사업의 주관 수행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음 * 과기정통(NIA, NIPA, KISA)·산업·중기·국토·농림·복지·해수·국방·기후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AX스프린트 사업						
지원조건	○ 컨소시엄은 자체 부담금(현금+현물) 부담이 필수이며, 컨소시엄 내 기업·기관의 정부출연금, 자체 부담금(현금+현물) 부담은 컨소시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AI 제품·서비스 개발 추진 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AI 모델 활용 권고 ○ 개발되는 AI 제품·서비스를 위한 NPU 활용 권고 ○ 인공지능데이터 활용 시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정부출연금 지원기준</th> <th>자체 부담금(현금) 부담 비율</th> </tr> </thead> <tbody> <tr> <td>컨소시엄</td> <td>해당 컨소시엄 사업비의 70% 이하</td> <td>해당 컨소시엄 자체 부담금의 13% 이상</td> </tr> </tbody> </table>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 비율	컨소시엄	해당 컨소시엄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컨소시엄 자체 부담금의 13% 이상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 비율					
컨소시엄	해당 컨소시엄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컨소시엄 자체 부담금의 13% 이상					
지원내용	○ 정보통신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실증 지원 - 비정형 화물 분류·이동을 위한 피지컬 AI 응용제품 : 기존 컨베이어·랙 등 핵심 설비 인프라의 변경 없이 즉각(Plug & Play) 투입 가능한 자율주행 협업형 피지컬 AI 응용제품 상용화 ※ 세부 사업내용은 '표.사업 지원내용-2.분과별 사업수행 내용' 참고						

나. 지원대상 및 제한 요건

□ 지원대상 및 컨소시엄 구성

- (지원대상) 정보통신 분야 제품·서비스 개발·실증을 위한 제품·서비스 공급기업, 수요기관 등
- (컨소시엄 구성) 수요기관 및 중소기업이 각각 1개 이상 포함된 3~6개 기관으로 구성
 - (수요기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겹치지 않을 경우 정부출연금 및 민간부담금 등 상호출자 없이 과제에 참여할 수 있음
 - ※ "수요기관"이란 과제에 참여하여 과제 수행의 결과 발생하는 유·무형의 결과물 또는 서비스를 수요자로서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기관으로 복수 지정 가능하며,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역할과 병행하여 수행할 경우 정부출연금 지급 가능
 - * NIA 제안서 접수 시스템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공동수급(컨소시엄) 승인 필요
 - (중소기업) 컨소시엄 구성기업 중에는 중소기업이 필수적으로 포함되어야 하며(1개사 이상), 제안 시 "중소기업 확인서" 필수 제출
 - ※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의미함

□ 지원자격 제한 요건

< 지원자격 제한 (제안서 접수 마감일 기준)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사업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평가) 제2항의 각호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수행 중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사업 참여 제한 등 처분 중인 사업자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지원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정산금, 환수금, 제재부가금, 가산금 및 기술료를 미납하고 있는 기업(기관)
-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의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기업)
- 사업 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 사항 발생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제안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제안기관이 귀책 사유로 협약 추진이 지연되어 과제 종료 시한 이내에 과제 완료가 곤란한 경우
 - 타기관의 IPR(지식재산권)에 저촉되어 과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26년 AX스프린트(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에 주관 수행기관으로 신청·참여한 경우, 본 지원 사업의 주관수행기관으로 지원·참여할 수 없음**
 - ※ 과기정통·산업·중기·국토·농림·복지·해수·국방·기후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AX스프린트 사업의 주관 수행기관으로 신청·참여한 경우 주관기관에서 배재하거나 제안과제 전체를 무효처리 할 수 있다.
 - 기타 정부의 사정으로 관련 사업의 추진이 중단된 경우
- ※ **접수 마감일 이후 위 기준에 해당하게 될 경우, 과제조정위원회에서 해당 제안기관의 과제의 제외 여부를 심의할 수 있음**

다. 컨소시엄 선정

- (컨소시엄 선정 수) 총 1개 컨소시엄 선정

분야	구분	사업 기간	예산	과제 내용
정보 통신	Type2	'26	14.5억원 내외	① (분과1) 비정형 화물 분류·이동을 위한 피지컬 AI 응용제품 - 기존 컨베이어·랙 등 핵심 설비 인프라의 변경 없이 즉각(Plug & Play) 투입 가능한 자율주행 협업형 피지컬 AI 응용제품 상용화
		'27	13.5억원 내외	

- 26년 AX스프린트(AI응용제품신속상용화지원) 사업*에 주관 수행기관으로 신청·참여한 경우에는 본 사업의 주관 수행기관으로 지원할 수 없음
- * 과기정통(NIA, NIPA, KISA)·산업·중기·국토·농림·복지·해수·국방·기후부, 식약처 등 10개 부처 및 산하기관에서 추진되는 AX스프린트 사업
- AI 솔루션 개발 추진 시,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한국어 처리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지속적 운영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I 모델 활용 권고
- 개발되는 AI 제품·서비스를 위한 NPU 활용 권고
- 각 분과별 제안(신청) 컨소시엄이 1개(단독)이더라도 공모가 성립함

라. 재원분담 및 정산

- 정부출연금 규모: 컨소시엄당 28억원* 내외
 - 1차년도('26) 14.5억원, 2차년도('27) 13.5억원 내외로 지원 예정이나,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정부출연금 규모는 변경(감액 등) 될 수 있음
 - * 정부출연금은 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과제조정위원회 심의·조정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음
- 사업기간 : 협약일 ~ '27.12.10.(금)
 - 1차년도('26) : 협약일~'26.12.31.(목), 2차년도('27) : 협약일~'27.12.10.(금)
 - ※ 매년 협약을 체결하며 연차평가 결과에 따라 2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 (70점 미만 과제는 2차년도 지원중단 가능)
- 사업비 지원방식: 상호출자(매칭펀드) 방식
 - 총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사업수행기관 자체 부담금(현금+현물)을 합한 금액

- 컨소시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 자체 부담금(현금+현물) 분담은 컨소시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함

■ 정부출연금 지원 및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기준

구분	정부출연금 지원기준	자체 부담금(현금) 부담 비율
컨소시엄	해당 컨소시엄 사업비의 70% 이하	해당 컨소시엄 자체 부담금의 13% 이상

※ (예시) 정부출연금이 28억원일 경우 자체부담금 12억원 이상(현금1.56억원 이상+현물10.44억원 이상)을 컨소시엄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담하여 부담(연도별 정부출연금을 고려하여 배분)

- 컨소시엄 내에서 정부출연금 지원기준에 따른 최소 자체부담금(현금+현물) 부담 기준을 만족할 경우, 컨소시엄 내 자체 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는 기업·기관의 참여도 허용됨
- 참여기관(중소기업) 사업비 분배 비율 확대 등을 통한 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마련 필요
- 연도별 정부출연금 규모('26:14.5억, '27:13.5억)를 고려한 연도별 자체부담금을 설정할 것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 과제 선정평가 및 과제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수정제안서)에 대해 전담기관과 사업수행기관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하고, 사업비는 과제 협약일로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

○ 정산

- 사업비는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전담기관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으로부터 1년 단위의 정산을 수행함
- ※ 사업수행기관은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류를 취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 미비 및 사업비 불인정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은 불인정 될 수 있음

① 비정형 화물 분류·이동을 위한 피지컬 AI 응용제품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물류·제조·서비스 등 다양한 산업 현장은 극심한 구인난과 인력도급 의존에 따른 높은 인건비로 수익성이 지속 악화되고 있으나
 - 기존 컨베이어·소터·랙 등 핵심 설비를 전면 개조하는 자동화 방식은 도입 부담이 과중하여 중소·중견 현장에 적용이 어려움
 - ※ 기존 설비를 유지하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피지컬AI 응용제품 도입 필요
-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자동화 사업은 사람의 이동·반복 동작 등 작업자의 보조 영역 자동화에 집중되어 있어 인력 의존도 해소에 한계가 존재하며
 - 박스·비닐 등 비정형 화물을 비전으로 식별하고 양손으로 파지·분류하는 인지·조작 영역은 자동화 공백으로 남아 1:1 대체 제품이 부재함
- 이에 따라 기존 컨베이어·랙 등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작업자 자리에 1:1로 투입되어 비정형 화물의 양손 파지·분류 작업이 가능하고
 -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로 VLA 모델을 구동하여 사람의 지시에 따라 작업 전환이 가능한 자율주행 협업형 피지컬 AI 응용제품 필요

□ 사업목표

- 기존 컨베이어·랙 등 핵심 설비 인프라의 변경 없이 즉각(Plug & Play) 투입 가능한 자율주행 협업형 피지컬 AI 응용제품 상용화
 - AI 반도체 기반 온디바이스로 VLA 모델을 구동하여 작업자 자리에 1:1로 투입되어 비정형 화물의 인지·판단·조작 작업을 자율 수행
 - (지원대상) 단일 제품으로 비정형 화물의 자율 이동·분류가 가능한 작업자 협업형 자율주행 피지컬 AI 응용제품
 - ※ 온디바이스 VLA 기반으로 이동과 조작 기능이 통합된 단일 피지컬 AI 응용제품

공통 요청사항

[참고사항]

1. 과제 제안 시 다음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과제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계량화하여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선정 컨소시엄은 최대 2년간 지원 가능하므로 해당하는 컨소시엄은 과제 제안 시, 각 항목에 대하여 **당해연도(2026년) 사업계획 및 차년도(2027년) 추진계획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성능목표(기술KPI)**, ②**성과목표(가치KPI)**, ③**상용화 목표를 연도별 별도 수립 및 제시**

가. AI 응용 제품·서비스 상용화 전략 제시

- **(제품·서비스 발굴)** 사용자 경험·접근성, 운영 효율, 품질, 사업성, 기술·가격 경쟁력 등의 관점에서 현재의 한계에 기반한 **개선 필요 사항 제시**
 - 개발 중 이거나, 상용화된 품목을 AI 응용제품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나 제품·서비스의 **기존 상용화 수준(TRL 등) 및 상세정보를 명확히 제시**
- **(AI 융합 필요성)** 기존 한계 해결을 위해 AI 적용이 **필요한 이유**와 사용자(편의성 등) 및 운영·사업적(효율성, 수익개선 등) 측면의 **개선효과** 제시
 -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측면의 AI 응용 제품·서비스 상용화 **필요성**과 수요처 관점에서의 사업종료 이후 **기대효과***를 정량적으로 제시
 - * 가정, 직장, 학교 등 국민의 다양한 입장에서 직·간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효과 포함
 - 안정적 기술지원 및 지속적인 유지보수 대응이 가능한 NPU 활용을 권고 하며, 필요성 및 적용 타당성(목적, 기대효과, 비용·성능 영향 등) 제시
 - 국내·외 동향과 시장성 조사결과 등을 기반으로 기존 유사 제품군(상용화 또는 상용화 진행중)에 대비하여, 고도화되는 사항을 비교 분석하여 제시
- **(상용화 전략)** 참여기관의 기술력·제품화 역량·판매/유통 역량 등을 근거로, 제품·서비스의 **상용화 가능성 및 추진 전략**을 객관적으로 제시
 - 참여기관의 기존 실적·역량을 근거로, 타 기업·기관 대비 경쟁우위와 성공(개발·실증·상용화) 전략을 객관적으로 제시

나. AI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실증 방안 제시

- (개발) 데이터 확보·활용 및 AI 기술 도입 방식(VLA 모델,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등)을 포함하여 AI 응용 제품·서비스의 **개발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AI 구현에 필요한 데이터의 종류, 확보 방법, 정제·품질관리, 개인정보·저작권·보안 **준수 방안** 및 **적용 기술 유형**(VLA 모델, AI 반도체 등) 제시
 - 개발 범위에 대한 개념 설계·구성도가 포함된 제품·서비스의 **기능별 구현 방안** 및 **성능목표**(기술KPI: 파지 성공률 등)를 수립하여 구체적으로 제시
- (실증) 제품·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실증 범위와 방식(파일럿 운영, 상용 운영 등)을 설정한 후 **실증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 다수의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경우 제품별 실증 방안이 상이할 수 있음
 - 실증 목적·범위, **실증 환경**(장소·장비/인프라) 및 **운영 방식**, **보안**(개인정보·저작권 등)·**장애 대응 방안**, **성과목표**(가치KPI: 처리량, 작업자 대체율 등) 제시

다. AI 응용 제품·서비스 활용·확산 방안 제시

- (상용화 증빙) 제품·서비스의 상용화(제품화·사업화) 성공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 가능한 **증빙자료**의 종류와 형태를 제안하여 제시
 - 매출 실적, 인증·시험성적서(KC, GS 등), 구매(도입) 의향서, 특허 출원 등 제품·서비스의 특성과 수준을 고려한 **상용화 목표를 설정**하여 제시
 - ※ 제시한 자료는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 결과보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성과활용·확산) 사업 종료 후 상용화된 제품·서비스 기반 매출 발생, 제품 고도화 등 성과활용·확산 추진계획(2년간) 및 **과급효과** 제시
 - ※ 구체적인 제품·서비스 추가 도입/판매 계획, 제품·서비스 다각화 방안 등 제시
 - 사업 기간 내 CES 혁신상 등 국제 시상식(어워드)에 제품·서비스 출품을 1건 이상 추진하여야 하며, 시상식 명칭, 부문, 일정 등 세부 계획을 상세히 제시
 - ※ 제품·서비스의 특성 및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국제 시상식은 자율적으로 선정·제안

- 국내·외 전시회 및 제품홍보 행사 등의 참여 제안이 가능하며, 제안할 경우 일정, 계획(전시 품목 등), 규모, 목적, 기대효과, 참석인원 등 상세히 제시
- 사업종료 후에도 매출 창출을 위한 활동을 지속하여야 하며, 전담기관 요청시 매출 실적 증빙 등 성과활용·확산 발생 현황을 제출하여야 함

라. 기타 요청사항

- **(자료공개)** 수행기관은 인공지능(AI) 학습(Training)에 적합한 형태와 내용의 **非라벨링데이터** 또는 원천 데이터 및 가공 데이터를 수집·제작 구축하여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AI허브를 통해 공개 방안* 제시
 - * 제안된 공개범위 등은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변경·조정될 수 있음
- 구축 계획서는 'AI허브(www.aihub.or.kr)'에 공개한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5'를 참조하여 작성 후 제안서에 포함시켜 제출
 - ※ 'AI허브/커뮤니티/품질가이드' 공지사항의 'AI 데이터 품질관리 가이드라인 v3.5' 내 '제2권. AI 데이터 구축 가이드 v3.5' 참조
- **(작업자 안전 확보)** 협동로봇 관련 국제 안전 기준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국내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시간 작업자 감지·충돌 감지 즉시 정지·속도 및 힘 제한 등 기술적 안전 수단의 구현 방안과 실증 현장 투입 전 사전 검증 계획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시하여야 함
- **(인증)** 사업에 적용되는 제품·서비스의 검증 또는 인증(보안적합성 검증, 전자파 인증 등)이 필요한 경우, 사업 기간 내 반드시 받도록 하여야 함
 - 인프라 구축 공사(정보통신공사 등)에 감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준수하여 수행
 - ※ 감리 업체 선정 및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수행기관이 부담
- **(정보보호)** 실증환경 운영에 필요한 장비, 매체 등에 대한 정보보호, 서비스 이용에 필요한 민감정보(개인정보 등), 제출 및 활용되는 제반 정보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방안을 제시
 - ※ 민감정보(개인정보·신상정보 등), 비공개 정보 및 운영을 위한 계정정보 등 대외 유출 시 문제가 되는 정보에 대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보호조치 등을 마련하여야 함

- 정보보호 유출 등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문제 발생 원인 및 분석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와 재발 방지책 또는 해결 방법 등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
- **(일자리 창출)** 사업수행 기간 내 컨소시엄의 신규 참여 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및 직·간접 고용 등 일자리 창출 계획과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직접고용) 사업수행 기간 내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의 업무 투입을 위한 신규 참여인력(신입/경력) 채용계획 제시
 - (간접고용) 본 사업 사업비와 자체 투자 예산을 바탕으로 관련 산업 분야의 간접고용 창출 기대효과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세부 산출 근거 제시
- **(사업보고)** 사업수행에 대한 수시, 월간 보고, 착수/중간/최종 결과보고 (발표) 자료 제출 등 사업 보고방안 제시
- **(현장점검 및 사업검수)** 사업수행, 성과활용기간의 사업 결과물의 활용 및 운영·유지보수 현황에 대해 전담기관에서 현장점검 및 사업 검수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점검 예정이며 관련하여 적극 협조
- **(성과홍보)** 제안사(컨소시엄)는 컨퍼런스, 전시회, 사업 성과보고회 등 총괄 부처와 전담기관이 주관·참여·지원하는 행사, 언론홍보 등에 적극 참여 협조
 - ※ 홍보채널, 미디어, 언론 등에 주요 성과에 대해 사업수행기관별 최소 1회 이상 홍보 (홍보 추진 시 반드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필요)
- **(성과관리)** 성과활용기간 동안 사업 성과관리 현황(활용현황, 추가공급, 고도화, 확산, 관련 매출액 등) 및 확산방안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요구 시 적극 협조
- **(요구자료 대응)** 각종 요구자료 및 수시 대응에 필요한 사업 관련 자료 작성 요청 시 사업수행기관의 적극 협조

가.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 요령

-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안 조건표 작성
- 제안서는 반드시 국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약어표를 기술하여야 함
- 제안서 구성은 별첨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에 따라 각각 세분해서 누락 없이 작성하고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의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여 작성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 부분을 명시하며 전담기관에서 요청 시 이를 제출해야 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서 표현하며, ~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은 모호한 표현은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작성 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함
 - 특히, 제안 기술 부분의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한 방안 제시
-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 지침 항목 중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 제출된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기재 내용은 전담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으며, 협약체결 시의 협약조건 일부로 간주함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의 제안 참여 세부 컨소시엄 구성, 적용 기술·기관, 도출성과, 컨소시엄의 특·장점과 차별성 등을 구체적으로 각각 구분하여 기술해야 함

나.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작성규격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는 A4 세로 형태, 제안발표 자료는 A4 가로 형태의 PDF 파일 형태로 작성해야 함(150p 내외권장)
- 총 분량은 표지, 간지, 목차, 가격산출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하며, 별첨 자료를 추가할 경우에도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과 별도 분리되는 파일이나 종이로 제출하지 않고 공모과제 제안서 파일 내에 연속되는 페이지로 첨부되어야 함
- 페이지 번호는 PDF 페이지 기준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 ※ 상기사항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시행하는 온라인 제안서 평가 시스템 (DPMS) 활용을 위한 사항임

다. 제안서(공모과제 신청서) 효력

- 공모과제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은 협상 시 총괄부처 및 전담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변경된 경우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협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단, 협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협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전담기관은 협상 시 추가 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공모과제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 공모과제 제안서에 대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라. 기타사항

-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기관이 부담함

마. 제재 조치

- 제안기관이 제출한 사업수행계획서 및 신청 서류, 기타 자료가 거짓이나 허위 등으로 판명된 경우에는 협약해약, 사업비 환수 및 관련법에 따른 제재

- 과제 수행 중 사업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차년도 동일 사업에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바. 수행결과 평가

- 기금사업 결과 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기간 종료 후 결과평가 실시

4 문의처

사업내용 및 예산, 협약관련 문의 : AI기술전략팀 (☎ 053-230-1735, hotspot@nia.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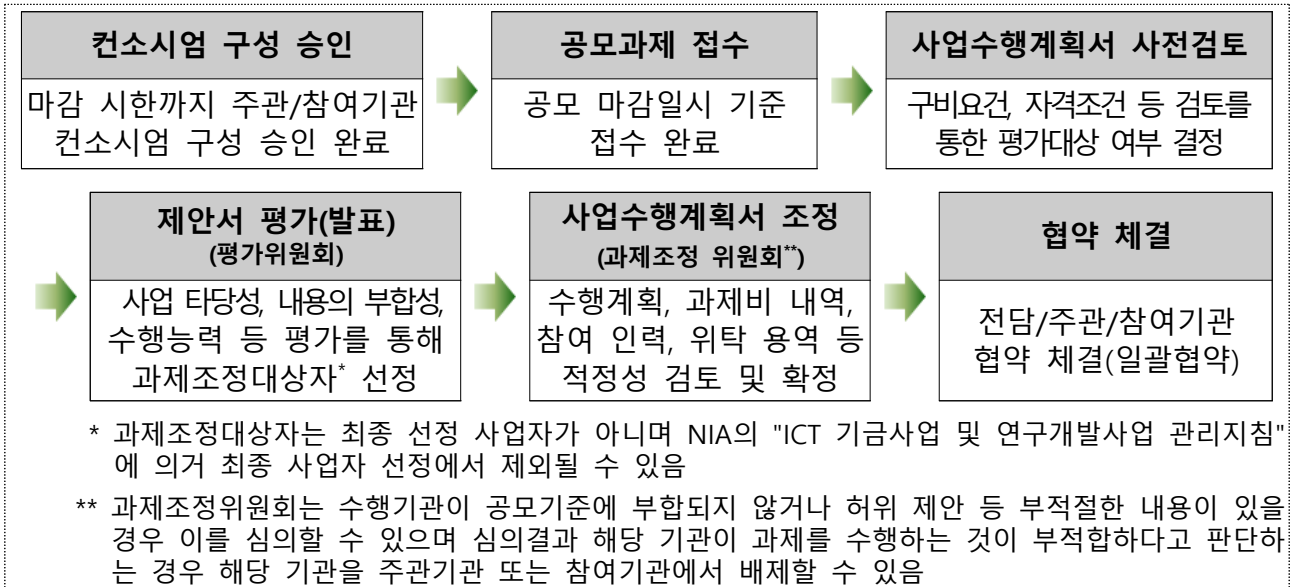
공고 및 제출 서류 문의 : 재무관리팀 (☎ 053-230-1169, 1106)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 오류 문의 : 정보보안관리팀 (☎ 053-230-1937)

Ⅲ. 사업 선정방안

1 평가절차

- 사업계획서의 적합성(사전) 검토 및 제안서 평가(평가위원회)를 통해 과제조정대상자 선정 후, 사업내용을 검토·조정·확정하여 협약



2 평가방법 및 기준

□ 과제 신청 방법

- 접수기한 : 공고문에 따름
- 접수방법 : 공고문에 따름
- 접수처 : 공고문에 따름
- 문의처 : 공고문에 따름

□ 공모안내서 설명회

- 별도 안내 예정

□ 사전검토 (1단계)

-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의 구비요건, 제출서류 및 자격요건 등 사전검토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9조, 공모공고서 및 안내서 기준
 - ※ 단, 비영리기관(대학, 협회 등)의 경우 제9조 제2항 적용 제외
- (검토대상) 기한 내 접수완료 과제

- (검토방법) 사업담당자 등이 수행계획서와 첨부·제출 서류 등 검토
- (검토결과)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9조 2항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사업자 등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내용 평가(2단계)

- 평가 적용 규정 및 지침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관련 규정 적용
 - ※ (적용 규정)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과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참여기관 선정·평가 세부운영지침" 따름
 - 사전검토를 통해 선정된 평가대상 선정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 공모과제 제안서(신청서) 발표
 -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안사의 발표 및 질의응답 30분 내외 실시
 - ※ 발표 및 질의응답 시간은 조정될 수 있으며 평가 일정 등 안내 시 공지 예정
 - 제안발표는 제안 컨소시엄의 총괄책임자(PM) 또는 실무책임자가 직접 발표하고, 불참 시 서면 평가로 진행
 - 발표 자료는 이미 제출한 발표 자료 또는 제안서를 활용하고, 접수 기한 외의 자료는 추가 제출할 수 없음
 - 제안서 발표회 일정은 별도 공지 예정

□ 과제 제안내용 및 사업비 심의·조정

- 과제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업수행 내용 및 수행 일정, 예산의 적정성 등 검토·심의하여 조정·확정
- 과제조정위원회 조정·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체결을 진행하고, 심의 결과를 거부하는 경우 협약을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

□ 협약체결 및 사업비(정부출연금) 지급

- 평가 및 조정을 거쳐 제출된 수행계획서(제안서)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과 컨소시엄 간 협약체결
- 정부출연금은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 분할지급
 - ※ 협약체결 직후 70%, 중간보고(중간점검) 후 30% 지급(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으며, 협약 체결 시점에 상황을 고려하여 전담·수행기관 협의를 통해 결정)

<평가기준(안)>

분류	평가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사업 타당성 (20)	목적 부합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이해도 추진방향 성과목표 기대성과의 명확성 및 적정성 과제 및 추진 목적의 적절성과 필요성 사업에 대한 이해도 및 명확성 목표 수준의 명확성 및 설정 목표의 도전성 	10
	사업수행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추진 조직, 체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간 역할 등의 적절성 등 참여기관 인력의 전문성, 참여기관의 실적 및 경영상태 등 컨소시엄 구성의 적절성, 참여기관 역할의 적절성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의지 적극성 및 구체성 	10
사업수행 내용의 우수성 (30)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응용 제품서비스 상용화 전략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제품서비스 발굴 근거의 구체성 및 타당성 제품서비스의 기존 상용화 수준 및 상세정보 제시의 명확성 AI 융합 필요성과 개선효과의 우수성 및 정량성 상용화 가능성 및 세부 추진 전략의 적절성 NPU의 안정적 기술지원 및 유지보수 대응의 적절성 	15
	개발 실증 방안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 방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개발 및 실증 방안의 명확성 및 완성도 VLA 모델 적용 및 온디바이스 AI 반도체(NPU) 적용 방식, 자체 학습 검증 체계 구축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데이터 확보 활용 방안의 구체성 및 적절성 AI 모델 활용 시 한국어 명령 처리 이해 능력, 보안성 및 정보 보호 역량, 신속한 유지보수 역량 등 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실현가능성 	15
사업수행 결과의 우수성 (25)	개발 실증 목표의 도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응용 제품서비스 개발 실증 목표의 도전성, 구체성 및 타당성 성능목표(기술 KPI)의 도전성, 구체성 및 측정 검증 계획의 타당성 성과목표(가치 KPI)의 도전성, 구체성 및 측정 검증 계획의 타당성 	15
	활용 확산 방안의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AI 응용 제품서비스 활용 확산 방안의 우수성 및 실현가능성 제안된 상용화 증빙자료의 우수성 및 적절성 성과 활용 확산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사업관리 (25)	사업관리 적정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정, 산출물, 보안 사업비 등 관리 적정성 사업 추진 일정 수립의 적정성 일정에 따른 산출물, 취득한 자료 정보에 대한 보안 관리의 적절성 민간부담금 매칭,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 	5
	품질관리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출물의 품질관리 구체성 및 우수성 산출물의 구체성 및 우수성, 객관적 확보 방안 적정성 산출물의 품질보증활동에 대한 구체성, 실현 가능성 SI허브를 통한 데이터 공개방안의 적절성 및 우수성 	8
	예산편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예산 편성) 예산의 구성, 세부 편성항목, 비용 규모 등의 적절성 민간부담금(현금/현물) 출자 규모의 적절성 사업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비 분배 비율의 우수성 사업비 비목, 세목별 항목에 대한 규모, 산출내역 및 용도에 대한 적절성 	7
	사회적 가치구현, 일자리 창출, ESG 경영실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온실가스 감축, 탄소중립 등 저탄소경제 축진의 적정성 윤리경영 및 정보공개 강화 등 지배구조 운영의 적정성 ※ E-S-G(환경·사회적가치·지배구조) 	3
안전 및 보건 관리, 재난관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전관리 매뉴얼의 현실적 작성 및 이에 대한 관련자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 비상상황 및 재난 발생시 구체적인 대응 방안 제시 프로젝트 수행을 위해 사업장을 구축하는 경우 사업장과 수행인력에 대한 안전 및 보건관리 방안 제시 	2	
총점			100
부정당업자 여부 (감점 -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계약법에 따른 부정당제재 조치에 해당하는 업체 		-30

3

기타 유의사항

가. 과제관리 유의사항

- 「ICT 기금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의 내용 중 명확히 해야 하거나, 변경하거나 강조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아래와 같이 기술함
- (업무보고회) 컨소시엄 주관사는 NIA 승인하에 참여사 모두가 참여하는 착수, 중간, 결과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함.
 - 착수보고자료, 중간 결과자료, 최종 결과자료 등을 제출
- (월간보고) NIA에서 정한 월간보고 양식에 의거 업무보고가 진행되며, 수시 보고 요청시 주관사는 이에 응해야 함.
 - 사업추진 관련 주·월간 보고(진도 및 일정관리 회의) 개최 시 영상회의를 원칙으로 하며, 대면회의 개최 시에는 발주기관(사업 담당부서) 소재지에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함
 - ※ 필요시 구체적 회의 방식과 장소는 상호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음
- (현장실사) NIA는 중간/최종 결과자료, 중간/최종 정산자료와 함께 현장실사를 추진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함.
- (위탁용역) 과제조정위원회에 의해 확정된 사항을 제외한, 컨소시엄의 모든 위탁용역은 NIA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 위탁용역계획, 수행기간, 소요예산 등 관련내용을 포함한 위탁용역 계획서 작성 후 사전승인을 득해야 하며, 과제 내의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함
- (기자재 구입) 3,000만원 이상의 신규확보(도입) 이 필요한 기자재는 구입·활용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 제안된 기자재 구입·활용 계획은 과제조정위원회를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 (변경관리) 과제 수행기간 중 과제목표, 과제내용·범위, 예산, 참여인력 등 주요 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NIA에 사전에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된 수행계획에 따라 과제를 수행해야 함.
 - ※ 기금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11조에 따라 수행기관이 협약의 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 종료 1개월 전까지 협약의 변경을 신청 하여야 함.

- 주요 수행계획 변경 사항이 아닌 경우, 변경 내역을 통보하여야 함.
- (예산편성) 과제 예산편성은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규정」 및 부속 지침을 적용하여야 함.
 - ※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업비 산정
 - ※ 정산 위탁수수료는 표준수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참여 수행기관의 수에 따라 가산하여 주관기관이 편성
- (계좌관리) 총 사업비의 현금은(정부출연금과 컨소시엄 자체 부담 현금) 별도의 계좌로 관리·운영 되어야함
 - (불인정) 과제비는 별도 신용카드, 은행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집행하되 본 과제와 무관한 목적으로 임의 집행 시 불인정 환수됨
- (출연금) 정부출연금은 협약체결 이후 1차 선금으로 70%를 지급하며, 중간보고회 개최 및 중간보고서 제출 이후 2차 선금으로 30%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단, 정부 예산 상황에 따라 지급받는 사업비 지급비율·시기가 변동될 수 있으며, 컨소시엄은 과제 협약일부터 예산 집행이 가능함.
- (회계·정산) 회계·정산은 NIA에서 지정한 위탁 회계법인이 이를 대행하며, 컨소시엄 내 모든 사업자는 회계·정산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회계법인의 정산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함.
 - 사업비 정산은 「기금사업 수행상황 및 정산보고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1년 단위로 정산하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에 지급되는 비용은 제안 컨소시엄이 부담하여야 함.
 - 사업비는 반드시 수행기간 내 집행하여야 하며, 최종보고서 인쇄비, 최종평가 관련비용, 정산수수료는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함.
- (결과물의 귀속) 과제 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 판권, 기타 제반 권리 등 무형적·유형적 결과물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취득한 사업수행기관 소유 또는 공동 소유로 처리하며,

- 과제 수행기관은 과제 추진과정에서 취득한 기술 등 성과의 확산, 활용성 제고, 지적재산권 확보 및 관리 등 필요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사업의 유·무형적 결과물 및 서비스 활용을 위한 컨소시엄 내 소유권 협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필요시 관련 자료 제출
- (성과실적 요청) 본 과제의 수행결과·성과실적은 과제종료 후 2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의 현장실사, 관계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 요청 등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청렴 이행) 제안기관은 협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모든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보안각서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이행각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함

나. 수행 결과 평가

-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 최종보고서를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NIA는 수행기관이 제출한 최종보고서, 현장실태조사 등을 기반으로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 추진
 - 평가결과 산정 시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
 - 평가 결과가 '미흡' 이하인 경우 사업 이행 성과가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하여 2차년도 사업 참여를 제한함
- 사업종료 후 평가위원회 성과평가 등을 거쳐 계속 지원이 결정될 경우, 과제조정위원회를 거쳐 차년도 지원 사업으로 재협약 체결이 가능
 - ※ 지원금액 및 사업기간은 성과평가결과, 사업계획서, 정부예산확보 상황 등에 따라 감액 등 조정될 수 있으며, 회계연도별로 협약 체결

평가점수	90점이상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 미만
평가결과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평가 항목(안) >

구 분	항 목	배점
목 표 의 달 성 도	○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달성도	정 량 가 (40점)
추진실적의 달성도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산출물 포함)의 달성도	
사 업 비 집 행 실 적	○집행계획 대비 사용실적(집행율)	
목 표 의 달 성 도	○도전적인 성과목표 수립과 목표 달성의 효율성 및 충실성 여부	정 성 가 (60점)
과 정 의 적 정 성	○사업추진체계 역할분담 및 일정준수 등 수행사업 내용의 적정성 여부 ○사업추진방식 개선, 비용절감 등 사업추진의 효율성 제고 여부	
결 과 의 질 적 수 준	○사업추진 산출물 등의 완성도 및 활용성 여부	
성 과 의 활 용 도	○성과활용계획의 적정성 여부 ○정보통신산업 및 국가경제·사회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지적사항 이행정도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 및 외부 저해요인 조치에 대한 적절성 여부 ○사업진도 및 현장실태 점검 등에서 지적받은 사항에 대한 이행여부	
총 계		100

※ 성과평가 채점 기준은 추후 변경될 수 있음

다. 사후 조치

- 수행기간 중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협약이 해약되거나, 과제수행에 대한 평가결과가 '미흡' 또는 '매우 미흡'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수행 기관에 대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동일 사업 참여 제한 등을 할 수 있음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정거래 준수 안내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자율적인 거래관행 개선, 공정한 거래·상생문화를 정착·확산하도록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에 따라 아래의 내용을 준수합니다.

- (1) 적절한 사업 원가를 조사·산정하고 절차에 따라 적절한 대가를 지급합니다.
- (2)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변경, 사업기간 연장, 납품기일 지연 등이 발생하여 과업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조건 및 비용에 대하여 계약업체와 충분히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3) 사업의 특성, 작업환경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관리비 등 ‘간접비’의 금액이나 총 계약금액에서 간접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4) 계약업체의 이윤을 별도 항목으로 계상하지 않고 사업비의 각 항목에 포함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5)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부담해야 할 행정절차, 민원해결, 환경관리 등에 관한 책임이나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6) 천재지변, 매장 문화재 발견 등 계약시점에서 계약업체가 예측할 수 없는 사항에 관한 책임이나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7) 사업 수행 또는 그 준비 과정에서 계약업체가 취득한 정보·자료·물건 등의 소유·사용에 관한 권리를 부당하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게 귀속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계법령 등에 규정된 기준에 비해 과도하게 경감하거나 계약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하자담보 책임 등을 과도하게 가중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9) 계약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계약업체의 이의제기, 분쟁조정신청, 손해배상청구 등을 제한하거나 계약내용 해석에 당사자 간 이견이 있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해석에 따르도록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0) 계약해제·해지사유 등을 정함에 있어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대해서는 민법, 국가계약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보장되는 수준보다 넓게 정하고, 계약업체에 대해서는 그 수준보다 좁게 정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1) 계약업체가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국가계약·지방계약법령 등에서 정한 수준 이상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2) 계약업체에게 제공하기로 한 장비, 시설 등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그 수량이 부족한 경우, 그 성능이 미달되는 경우 등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비용을

계약업체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또는, 계약업체에게 제공한 장비, 시설 등이 계약업체의 책임 없는 사유로 멸실, 훼손된 경우에도 계약업체에게 그에 대한 책임, 또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13) 사업 수행 시 적정 사업 수행 기간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합니다.
- (14) 계약조건이나 계약금액 때문에 계약업체가 안전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그 조건 및 비용의 보전을 협의하여 진행하겠습니다.
- (15)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원칙적으로 공동도급을 통한 사업 수행을 권장합니다.
- (16) 하도급 계약을 통해 과업을 수행할 경우, 계약업체는 하도급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업체가 하도급법 위반하여 공정위 제재를 받는 경우, 향후 업체 선정 과정에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법에 규정된 불공정행위 유형 >

- ▶ 하도급업체에 대한 ▲계약서 교부의무, ▲법정기한내 하도급대금 지급 의무, ▲공공기관으로부터 원도급대금을 조정받은 경우 그 비율만큼 하도급대금을 조정해줄 의무 등을 위반한 행위
- ▶ 하도급업체에 대한 ▲부당한 거래조건(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감액, ▲부당한 위탁취소, ▲부당 반품, ▲기술자료 부당 요구, ▲기술유용, ▲경영간섭, ▲보복행위 등

- (17) 하도급대금이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하도급대금·노무비를 직접 지급하거나, 직접 지급효과가 있는 대금 직불시스템(하도급 지키미 이용 등)을 통해 대금을 지급합니다.
- (18)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사업 수행과정에서 느끼는 애로·불만사항을 제보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및 오프라인 제보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애로사항 등 익명제보시스템 (레드휘슬) 안내 >

1. 신고대상 및 내용

- NIA 임직원이 업체를 부담하게 대우하거나 불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 NIA 임직원이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기타 기업의 건의사항, 개선 또는 시정이 요구되는 사항

2. 신고요령 : 직접방문, 우편, 이메일(감사실장), 신고사이트 방문(www.redwhistle.org)

3. 신고 시 유의사항 :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나, 제보자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이 허위이거나, 불분명할 경우 접수 처리 불가

※ 당사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에 따라 공개되지 않으며, 민원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음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NIA 국가 인공지능 사업추진 윤리원칙

제정 2021.9.6.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지능정보기술로 국가사회 전반의 혁신성장과 디지털 기반 ESG 가치 실현에 기여하고자, 국가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 및 실행하는 단계에서 지켜야 할 윤리원칙을 선포하고 실천을 다짐한다.

하나, AI 사업기획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공지능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장기적인 비전과 실행과제를 제안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을 기획하고 정책을 개발할 때 인간에게 이로운 인공지능의 활용을 최우선으로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과 정책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산·학·연·관 전문가와 일반시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하나, AI 사업실행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가 인간의 존엄성 보장, 국민의 편익과 행복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도록 고려한다.

우리는 인공지능이 경제, 사회, 문화, 정치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편향되지 않도록 개발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를 사회보편적인 제도와 윤리규범 안에서 개발·활용하며, 오남용을 방지하도록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나, AI 사업확산을 위한 윤리원칙

우리는 인공지능 서비스의 혜택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교육하고 지원하며, 국제사회와도 활발히 협력해야 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추진의 결과물이 사회, 경제, 문화, 일상생활 등에 미치는 사회적 영향력을 고려하여 사업 개선에 반영한다.

우리는 인공지능 사업성과가 창출한 경제·사회적 가치가 널리 공유되어 모든 국민에게 고르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임직원 일동

IV. 과제 제안서(신청서) 양식 및 제안요청 세부내역

※ 별도 파일 참조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V. 과제 관리 규정 및 지침 (각종 서식 포함)

※ 별도 파일 참조

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